

유럽국가의 노동시장 활동 및 가구소득 분포*

Wiemer Salverda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암스테르담노동연구소(AIAS) 소장)**

■ 머리말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경제와 노동시장은 최근 대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러 측면에서 상호연관성이 큰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의 학력 증가와 그에 수반하는 청년층(15~24세)의 교육 참여 증대
- 여성의 고용참여 급증
- 다수의 국가에서 파트타임직의 중요성 증가
- 개인화, 가구 형성, 출산
- 위와 같은 내부적 변화에 더하여, 실물경제(무역) 및 금융의 세계화

* 이 글은 부분적으로 'Growing Inequalities' Impacts(GINI) 프로젝트에서 현재 준비 중인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곧 발간될 예정인 네덜란드의 국가연구(GINI-AIAS, 2012)에 기초하고 있다.

** 암스테르담 대학 내 소재하는 '암스테르담 불평등 연구센터(Amsterdam Centre for Inequality Studies (amcis.eu)) 및 '암스테르담노동연구소(Amsterdam Institute for Advanced Labour Studies(luva-aias.net))와 불평등의 확대와 그 영향(GINI) 연구 프로젝트(gini-research.org). ECHP 데이터와 관련하여 애써준 Daniella Brals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참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구와 노동시장의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임금소득은 과거에나 현재나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근로소득(earnings)의 분포, 소득(incomes)의 분포 및 이들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의 취지는, 노동시장 활동과 근로소득, 그리고 가계활동 및 소득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가를 고찰하고 그 관계가 지니는 정책적 함의를 논하는 데에 있다.

이 글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2인 소득자 가구 및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에 초점을 두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다음으로, 특히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와 관련하여 근로소득 분포를 분석하는데,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는 이러한 근로소득으로부터 나오는 가구소득의 분포와 연결되어 있다. 셋째, 소득분포 최하위에 해당하는 빈곤층을 근로소득 분포의 최하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번에도 파트타임직의 역할에 주목한다. 끝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저임금 및 빈곤 관련 정책입안에 있어 의미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논의한다.

이 글은 유럽연합 14개국(EU-14)¹⁾(‘구 유럽’)에 초점을 맞추며 동부 및 중앙유럽은 제외한다. 중요한 점은 (장기적 활용가능성의 측면에서)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높아졌으며, 그와 동시에 국가 간 차이는 이미 EU-14 내에서도 확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그리스와 포르투갈을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와 비교해 보라). 한국과 미국은 필요에 따라 포함시키고 있다. 논지의 특정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네덜란드의 사례, 특히 시간에 따른 변화를 거론하고자 한다. 당연히 필자는 네덜란드 사례가 가장 익숙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네덜란드의 특정 동향(가령, 파트타임의 폭발적 증가)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고 진전된 상태여서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따라서 활용가능한 데이터도 더 많은)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네덜란드는 다른 국가들의 향후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실로 볼 수 있다. 또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비교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는 5개국과도 비교한다.

1) ‘구’ EU-15에서 룩셈부르크 제외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이다.

■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사회가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로 국민의 학력 증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생산가능연령(15~64세)인구의 최저학력 비중이 1960년 64%에서 현재 8%로 급감하였고,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EU-14의 저학력 평균(가중치 비적용) 비중도 1996년 45%에서 2010년 34%로 감소하였다.²⁾ 이러한 교육 확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에 따라 사회 전반과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극적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의 상승 이동은 당연히 청년층(15~24세)의 교육 참여 대폭 증가를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청년층의 교육 참여는 1960년 1/5에서 2010년 2/3로 확대되었고, EU-14 평균(1996~2009)도 58%에서 63%로 높아졌다. 한국의 교육참여율은, 시작은 58%로 동일하였으나 77%까지 증가하여 어느 유럽국가나 미국도 이룩하지 못한 급성장을 보였다.³⁾ 이러한 증가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이 학력에 대한 논의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여기서 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경로를 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교육 참여와 고용의 중복률(overlap)이 커진 반면(네덜란드, 덴마크는 40~50%p),⁴⁾ 다른 국가에서는 중복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한국은 10%p 미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년 고용과 실업률, 전체 파트타임 고용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급성장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학력 분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평등해졌다.⁵⁾ 역설적으로 학력별 취업기회 및 임금수준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생겨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도 심화되

2) 최저학력은 초등학교 교육 이하를, 저학력은 고등학교 교육 이하를 의미한다.

3) OECD의 연령별 학생 데이터와, '유럽노동력조사(European Labour Force Survey)' 및 OECD LFS(한국과 미국의 자료)의 인구 통계수치를 참조하여 필자가 산출하였다.

4) 이로써 뒤에서 논의될 혼합 방식(combination scenario)(가구-고용)에 또 하나의 방식(교육-고용)이 추가된다.

5) Meschi and Scervini (2010) 비교 참조.

었다(표 1). 전통적으로, 학력별 취업기회 변화율은 성인 여성의 경우에 격차가 큰데, 여성고용의 급증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미미하다. 명백하게 여성의 성장으로 모든 항목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항목 간 차이는 여전히 좁아지지 않고 있다.⁶⁾ 이러한 격차는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간씩 좁혀졌을 뿐이며, 덴마크가 대표적이다. 놀랍게도 핀란드, 스웨덴, 영국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목할 만한 사실로, 성인 남성 간 격차는 대체로 커지고 있다. 전반적 학력수준이 여전히 낮은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국가에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흥미롭다(횡단면으로 살펴보면, 변화율은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참여에 있어 국가 간 차이는 남녀를 불문하고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의 경우에 훨씬 더 크다.

〈표 1〉 저학력과 고학력 간 고용/인구 비율 격차(1996~2010)

(단위: %p)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여성 (25~64세)	2010	-30	-43	-35	-28	-35	-33	-32	-35	-43	-41	-36	-25	-30	-34
	1996	-35	-47	-37	-36	-39	-30	-32	-37	-47	-48	-40	-32	-23	-23
남성 (25~64세)	2010	-25	-28	-25	-18	-20	-28	-24	-10	-29	-16	-15	-10	-16	-22
	1996	-21	-27	-22	-18	-15	-25	-22	-5	-22	-18	-16	-11	-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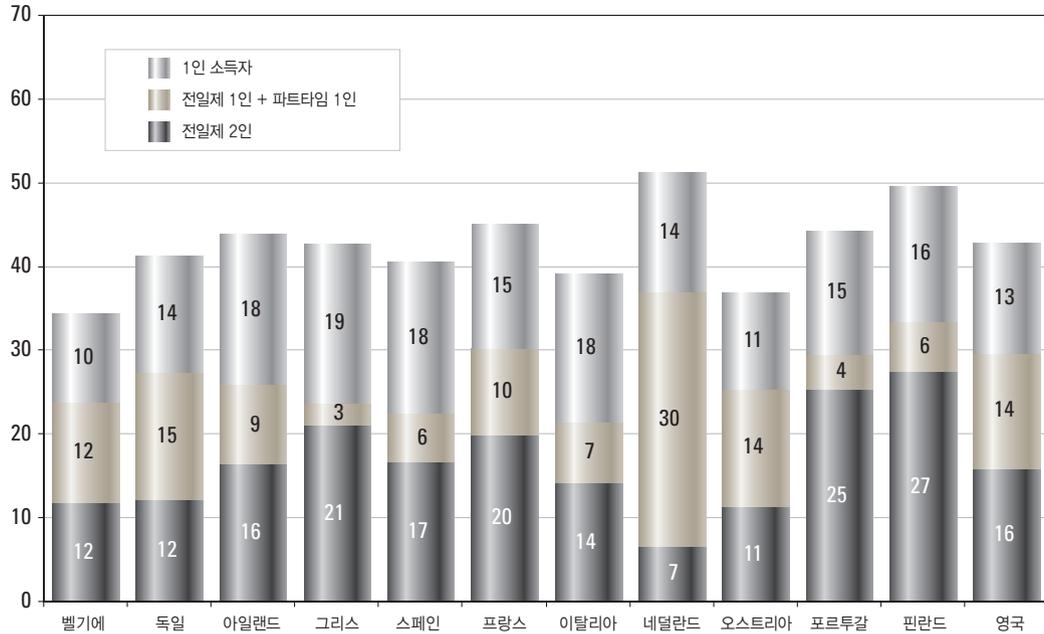
자료 : Eurostat,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고용에서 여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과 가구 간 관계도 변모하였다. 현재 동일한 가구 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2인 소득자 가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1인 소득자 가구를 대체하고 있다(그림 1). 모든 국가에서 이들의 비중은 단일 소득자를 추월하며, 때로는 2배 이상에 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주로 여성배우자의 임금노동과 가계활동을 결합하고, 국가 간 차이가 크긴 하지만 파트타임

6) 1996~2010년에 여성고용률은 평균 10%p 증가하였다.

[그림 1] 전체 가구 대비 1인 및 2인 소득자 부부의 비중(EU-14, 1992~2010)

(단위 : %)



주 : 학생과 65세 이상 제외. 파트타임 정의는 국가별로 상이함.

자료 : Eurostat,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고용에 점차 높은 비중을 두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여러 국가에서 2인 소득자 가구의 대다수가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1인은 파트타임 근로자인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가령,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2인 소득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다. 네덜란드는 2인 소득자 가구 내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이지만, 부부 중 2인 소득자 가구의 비중이나 전체 가구 중 임금노동 제공 부부의 비중도 가장 큰 국가다. 이러한 사실은 파트타임직이 가구의 고용참여를 원활하게 하는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인 소득자 가구의 증가 동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
-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간 관계가 더욱 복잡해짐

먼저, 지난 20여 년간 여러 국가에서 고용증대의 상당 부분은 파트타임 일자리에 의지해 왔다(표 2). 총고용의 절대적 증가를 살펴보면, 다소 하락한 포르투갈부터 46% 증가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한 아일랜드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분의 과반수 이상은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는 예외적으로 높은데) 파트타임 고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파트타임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덴마크, 스페인, 한국). 단지 미국의 경우에만 파트타임직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 이러한 파트타임 증가는 여성의 역할이 매우 큰데, 여성의 비중이 5분의 1에 그친 영국과 여성고용 중 파트타임직이 실제로 감소한 덴마크의 경우만 예외적이다. 이에 더하여, 저학력 근로자의 파트타임직 발생률이 고학력자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EU-14 평균으로, 저학력 남성 근로자의 12%가 파트타임직에 고용되어 있다. 이는 1996년보다 8% 증가한 수준인데, 이에 비해 고학력 집단의 파트타임직 비중은 7%이다. 여성 저학력 근로자 중 파트타임직 비중은 44%로 이전의 34%보다 증가한 수준이며, 이에 비해 여성 고학력 집단 내 비중은 26%이다.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통해, 학력별 취업 요인에 근로시간이라는 명확하면서도 그 비중이 점차 커지는 요소가 추가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고용 접근성은 학력에 좌우되고, 2차적으로도 취업에 성공하면 근로시간이 학력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파트타임직은 저임금 및 저숙련 고용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2차 소득자와 학생의 혼합근로 방식에 파트타임직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위 고용부분에 학력과잉이 늘어나게 되고, 직접적으로 저학력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저숙련 전일제 일자리 감소를 통해 경쟁이 심화된다(Salverda, 2008; 2012).

〈표 2〉 파트타임직의 총고용 증대 기여도(EU-14, 미국, 한국, 1991~2010)

(단위: %)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미국	한국
총고용 증가	7	4	3	41	2	18	22	46	6	30	-1	7	13	22
파트타임 비중	67	272	38	32	177	22	18	55	133	64	94	77	4	31
성인여성 비중	88	65	-230	70	38	76	75	69	82	64	91	19	55	53

주: 파트타임의 일반적인 정의는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를 의미함.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두 번째는 노동시장 근로소득 분포와 가구소득 분포의 관계가 더 복잡해진 것과 관련된다. 이는 이 글 주제의 중심이 되며 이하에서 다루도록 한다.

■ 임금소득 및 가구근로소득 분포

파트타임 고용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주당, 연간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근로소득에 있어 다양성이 커지며, 그와 함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 시간 또는 연 단위로 근로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불평등의 측정수치에 있어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먼저 이 문제를 살펴본 후에, 주된 소득원이 임금노동인 가구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소득분포와 연계해 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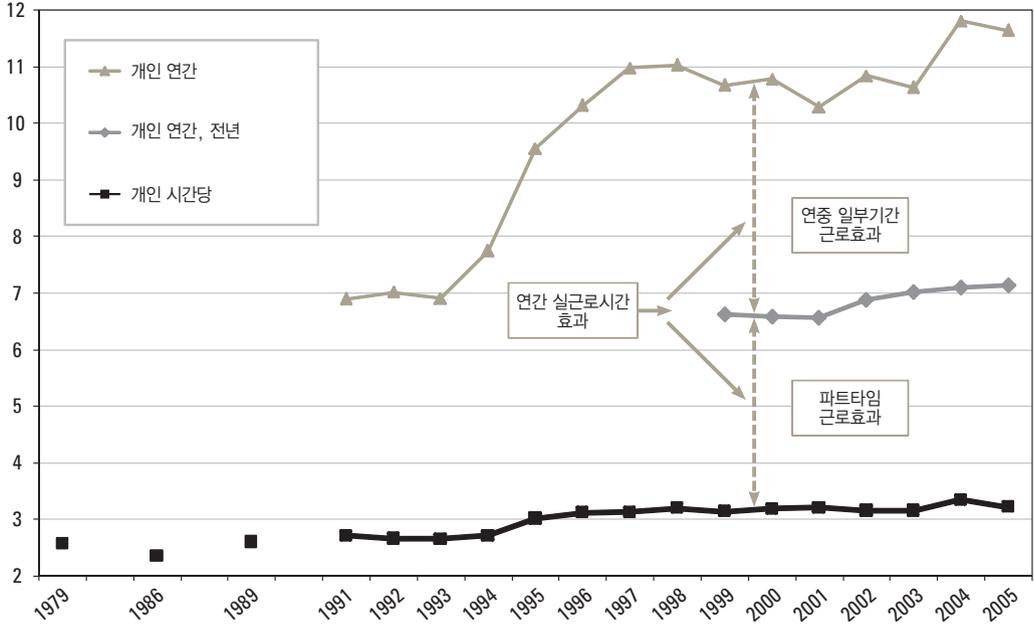
근로소득 불평등

[그림 2]는 네덜란드 상황을 보여준다. 종종 사용되는 십분위 최상위의 최저치(또는 9분위 최고치)와 최하위의 최고치 간 비율인 D9:D1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불평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 그림은 고용상태의 개인 근로자와 그들의 근로소득만을 포함한다.

그림에서 맨 위와 맨 아래의 선은 각각 연간 및 시간당 근로소득을 가리킨다. 맨 위의 선은 개인들의 상이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효과를 반영하며 맨 아래의 선은 1인당 1시간에 관한 것으로 근로시간 차이는 감안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간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불평등 수치를 3에서 12로 4배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연단위 비율도 매우 크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 걸쳐 두 배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 수의 차이가 지니는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비교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아래의 시간당 소득선도 4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파트타임 근로로 인한 짧은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노동시장 진입, 퇴직 또는 임시 고용 등의 이유로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서 발생하는 연단위 부분근로(part-year) 때문에, 1년간 개별 시간에는 차이가 난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연단위 부분근로의 효과는 1년 중 일부만 일하는 이들 중 파트타임 고용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짧고 근로소득은 더 적은 경우 더 강화

[그림 2] 연간 vs 시간당 임금소득* 불평등(D9:D1 비율) (네덜란드, 1970~2005)



주: * 근로자 세금 및 기여금 납부 전 총액. 단, 사용자 기여금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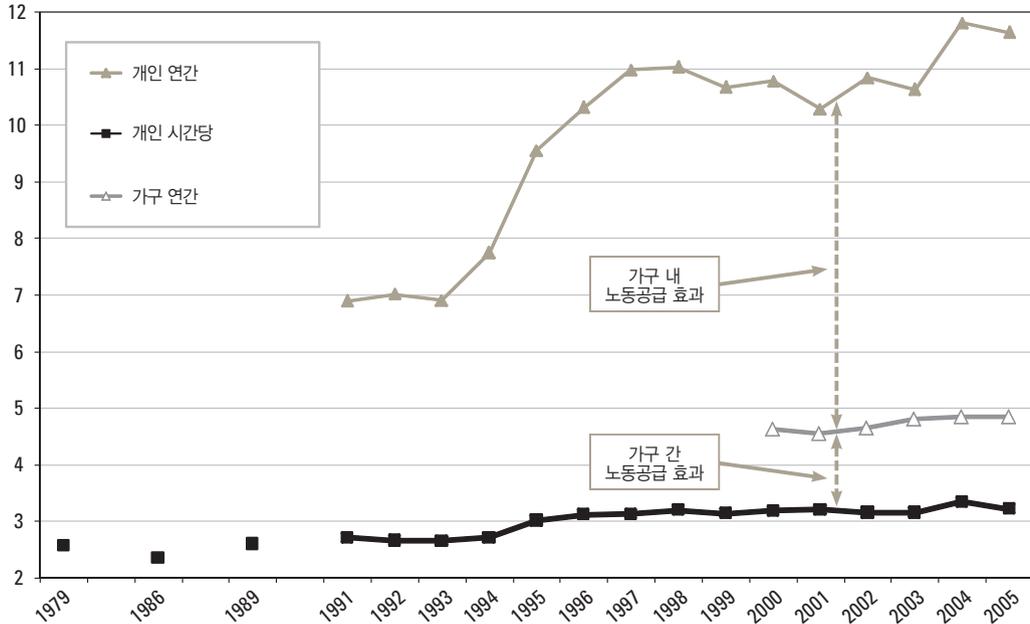
된다. 그림에서는 2000년대에 대해 연단위 부분근로의 효과와 해당연도에 지속된 파트타임 효과를 구분하고 있다. 두 효과의 크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연단위 부분근로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파트타임 효과는 십분위 비율을 3에서 6으로 상승시켜 근로소득 불평등 수준을 2배로 높이고 있다.⁷⁾

근로소득 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이러한 접근은 근로소득과 가구소득분포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에 대해서는 [그림 3]을 참조하며 논의하도록 한다. 연간근로소득은 조세정책에서처럼 통계에서도 일반

7) 이 효과에는 전일제의 시간 차이도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3] 개인임금소득 vs 가구근로소득 불평등 (D9:D1 비율) (네덜란드, 1970~2005)



적으로 연단위로 산정되므로 개념상으로 가구소득분포에 합치한다. 총근로소득은 1차 또는 시장소득에 해당한다. [그림 3]에는 [그림 2]의 연간 및 시간당 소득선에서 출발하여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가구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추가되었다.⁸⁾ 이 불평등 수준은 맨 위와 아래의 두 선 사이에 위치하며, [그림 2]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 효과를 두 부분 - 가구 간 및 가구 내 효과 - 으로 나누고 있다. 가장 큰 효과는 가구 내 효과이다. 이로써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구불평등은 노동시장 불평등과는 매우 다르며, 둘째, 가구는 노동공급 시간을 늘림으로써 노동시장 근로소득 불평등의 많은 부분을 중화시키거나 흡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 비율은 근로소득의 경우 12였던 것이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5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한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가구와 비교할 때보다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불평등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근로시간에 있어 가구 간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시간당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십분위배율을 3에서 거

8)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이 근로소득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소득도 발생할 수 있다.

의 5로 약 50% 높이고 있다. 가구소득 불평등에서 노동공급 정도가 차지하는 설명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노동공급 정도는 부부의 경우 전일제 2인으로 하여 - 가령, 연간 3,500시간부터 극단적으로는 모두 실업자인 경우인 0시간까지 -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결과적으로 소득분포 양상은 1인 소득자가 주를 이루던 때와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구가 전일제 1인 소득자 가구라면, 가구근로소득 분포는 - 물론 연 단위 부분근로 효과(와 종종 간과되는 전일제 근로시간 개인차)를 제외하면 - 시간당 근로소득 분포에 가까운 양상을 띠 것이다. 결과적으로, 2인 소득자 가구의 확산은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심화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를 지닌다.

■ 빈곤과 저임금

유럽의 정책과 통계에 있어 빈곤은 가구차원에서 정의되며, 한 국가에서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중위값(median net-equivalised household income)의 60%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의미한다.⁹⁾ 따라서, 빈곤은 균등화한 가구소득 분포의 하위부분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총근로소득과 1차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당 등의 급여가 추가되거나 사회적 기여금과 소득세가 공제되기 이전의 총액을 뜻한다. 순가처분소득은 1차 소득을 공적소득이전, 사회보장기여금, 세금 등을 통해 재분배한 후의 소득이다. 순가처분소득은 가구구성원들이 직접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형태의 가구소득이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단, 가구의 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구 수요와 관련하여 소득을 '균등화' 하기 위해 가구 구성에 맞추어 양식화하고 통계적으로 수정한 경우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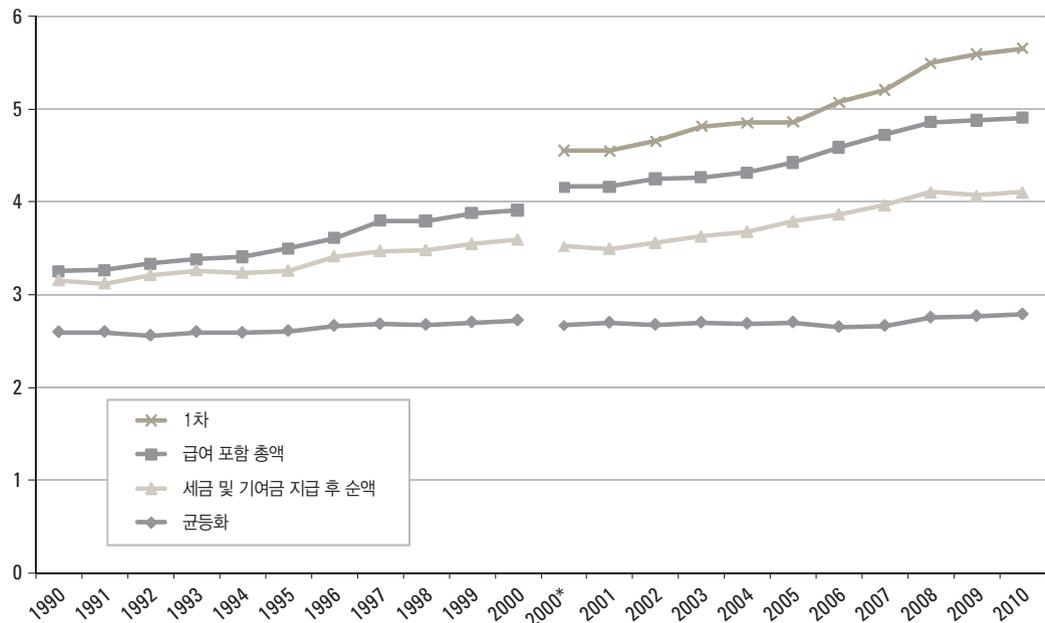
9) 이러한 상대적 접근법과 일반적 균등화(첫 성인은 1.0, 14세 이상의 기타 가구구성원은 0.5, 14세 미만의 가구구성원 각각은 0.3)는 유럽의 접근법과 미국식을 구분 짓는 특징이다(census.gov/hhes/www/poverty/data/threshld/index.html). 미국에서는 빈곤을 궁극적으로 '대표물품 바스켓(a basket of goods)'에 기초하여 절대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며, 가구의 유형을 규모 및 18세 미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48개로 구분한다. 유럽식 균등화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OECD 참조).

의미가 있다. 먼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인 가구들의 재분배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소득분포 하위부분인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근로소득 분포의 하위부분과 연관지어 본다.

1차 소득에서 순소득으로의 재분배

[그림 4]는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1차 소득으로의 첫 단계를 거친 후부터 시작되어 순균등화 가구소득 분포로 끝맺는 연속적 단계들을 보여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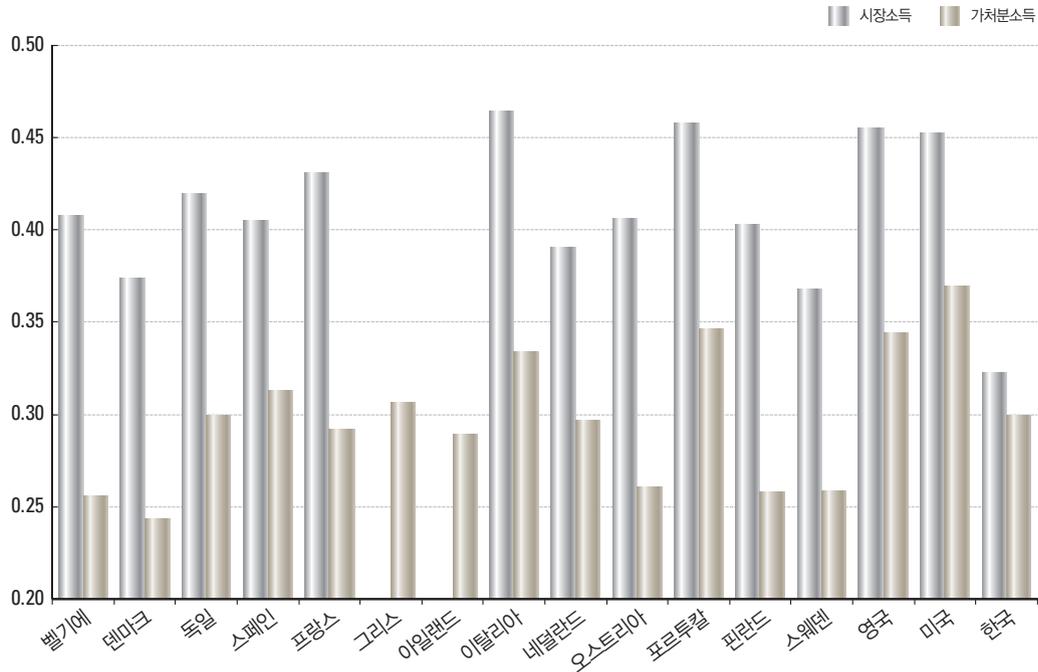
[그림 4] 가구단위 근로소득 불평등(D9:D1 비율) : 1차소득부터 순균등화소득까지(네덜란드, 1990~2010)



앞에서 보았듯이, 가구 자체의 노동공급 태도는 근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을 절반 이상 감소 시킨다. 이전소득을 더하고 기여금과 세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평등이 1/4 감소하며, 그리고

10) 2010년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 규모로 인해 1차 소득 불평등이 명백한 증가를 보인다.

[그림 5] 균등화 적용한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지니계수 (18-64세, EU-14, 미국, 한국, 2000년대 후반)



자료 : OECD (2011), Table 6.1.

나서 순소득을 균등화하면 또 그만큼 감소하므로, 이 두 과정에서 불평등 정도가 다시 절반 정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모두 합해 보면 최초의 총근로소득 불평등 중 1/4 미만만이 가구소득 차원에 남게 된다. 달리 정리하면, 3/4 감소분의 대부분은 가구의 책임이다. 감소분의 2/3는 가구의 노동공급 태도로부터 야기되며, 약 10%는 가구구성에 의한다. 결과적으로, 재분배 정책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총감소분의 1/4 미만이다.

[그림 5]는 유효한 실증적 내역과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2011년 12월 OECD 보고서 'Divided We Stand'에 기초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관점¹¹⁾에서 EU-14, 미국, 한국의 비교 가능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또한 소득이전, 기여금 및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인해 EU-14(프랑스, 그리스 제외) 평균 소득불평등이 약 30%나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확실한 예외는 한국으로 7%만이 감소했고, 미국은 18% 감소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24%에 이르렀다.

11) 측정지표로서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순소득 산정 전 총소득을 균등화하며, 비근로소득 가구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네덜란드 사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 앞서 언급한 가구 노동공급으로 인한 대폭 감소와 함께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다.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동향이 발견된다. 즉, 1차 소득 및 순소득 불평등이 대체로 평행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여전히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양적으로 볼 때 비교적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불평등 증가에 대한 보완책을 제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순소득 불평등의 증가로부터 점차 벗어나고 있는, 대체로 안정적인 순균등화소득 불평등과 놀랄 만큼 대조적이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구성이 상당히 변화함으로써 균등화 효과가 더 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균등화 시작점에서 1인 소득자 가구의 순소득이 2인 소득자 가구의 균등화 소득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소득 가구의 개별화가 심화됨에 따라 순균등화 소득이 순소득에 비해 더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소득 분포의 최상위에서는 균등화가 순균등화 소득을 순소득보다 낮아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게도, 기초가 되는 가구구성은 블랙박스라 같아서, 특히 가구의 규모가 소득과 합치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무시된다. 2인 소득자 가구의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가구들이 근로 소득 및 소득분포에서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추론할 수도 있겠으나, 위 내용은 추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주제다.

빈곤과 저임금

2인 소득자 가구의 증가로 야기된 노동공급 이동은 노동시장의 임금수준과 관련된 근로빈곤 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와 함께 정책수립의 어려움도 커진다. <표 3>은 총빈곤수준(aggregate level of poverty)을 나타내며, 빈곤과 관련하여 가구의 임금노동 공급¹²⁾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보여준다.

12) 근로공급은 가구 내 생산가능연령 해당자 또는 성인으로 나누어 측정된다. 따라서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부부의 노동강도는 혼자서 일하는 미혼자와 같다. 실제로, 근로시간이 아닌 기타 지표들이 사용되며 분류방식도 다양하다. Ward(2011)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로에 초점을 두어, 5개 범주(0, >0-<.05, .05, >0.5-<1.0, 1.0)로 분류하였다. Eurostat은 근로잠재성(work potential)의 백분율에 초점을 두어, 0.2-0.45, 0.45-0.55, 0.55-0.85, 0.85-1.0로 분류하였고, Bradshaw and Mayhew(2011)는 실제로 근무한 잠재적 근로 개월수의 백분율에 초점을 두어, 0-0.49, 0.50-0.80, 0.81-1.00로 분류하였다.

〈표 3〉 근로공급별 가구 빈곤율(EU-14, 2008)

(단위: %)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전체 근로공급	12	15	15	12	20	14	13	20	16	19	11	19	12	19
0	31	35	53	25	39	39	21	30	38	34	24	36	32	49
낮음	23	18	28	13	33	16	24	44	15	27	8	35	13	39
중간	10	10	13	9	17	9	14	21	7	18	12	20	13	15
중간-전	3	2	4	4	14	2	4	21	3	6	4	24	4	6
전	4	4	4	6	7	3	4	9	3	5	5	6	5	3

자료 : EU-SILC data: Bradshaw and Mayhew(2011), Table 1.1, Ward and Ozdemir(2011), Table A.1.

전반적으로 빈곤위험은 네덜란드의 11%부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의 19~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험도는 가구 노동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무직가구, 즉 근로공급이 '0'인 가구에서는 빈곤위험이 평균보다 2~3배 더 높아서, 낮게는 프랑스의 21%, 가장 높게는 영국의 49%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의 절반 미만을 임금노동에 사용하는 근로공급이 낮은 가구 - 기본적으로 전일제 소득자가 전혀 없는 가구를 의미 - 의 경우도 거의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든 관련된 가구구성원이 전일제로 근무하거나('전') 절충된 방식(전일제와 파트타임, 즉, 중간-전에 해당)으로 일하는 경우, 빈곤위험은 더 낮아서 평균의 1/5과 1/2 사이가 된다. 예외적으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절충 방식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높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절충 방식이 근로공급이 '전'인 경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근로공급 '0'과 '전'의 위험 비율로서 산출되는 근로공급 변화율(work-intensity gradient)은 영국이 가장 크고(15배), 다음으로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12~13)이며, 그리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가 가장 낮다(3~5).

EU의 빈곤측정은 순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구의 임금수준과 고용량에 기초한 소득 외에 가구특성에 좌우된다. 그 결과 빈곤과 임금수준 간에 일대일 관계는 없으며, 이는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저임금은 근로소득 분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로, 이는 빈곤이 소득분포에 있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은 흔히 (OECD, Eurostat) 중위임금의 2/3 미만으로 정의된다(가능하면 파트타임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저임금은 분명 빈곤위험을 높이지만(Lohmann, 2008),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구성원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고임금 근로자라도 빈곤가구에 속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저임금직 종사자가 소득분포에 있어 놀라울 정도로 높이 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표 4>에 나타나 있다.¹³⁾ 이 표는 생산가능연령 대 가구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를 적어도 1명 이상 포함하는 가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발생률은, 낮게는 핀란드의 (전체가구 대비) 11%에서 높게는 독일의 22%까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 수치는 취업자 중 저임금 발생률의 국가별 차이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 표는 총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열 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에 있어 전체가구 대비 해당 가구의 백분율을 가구 빈곤 및 비빈곤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6개국 모두에서,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소수만이 실제로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십분위를 통틀어 전국적으로 전체가구 대비 1~3% 사이(‘소계’)). 빈곤이 저임금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빈곤에 해당한다.¹⁴⁾ 이러한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과 대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빈곤하지 않은 가구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전국적으로 9~19%를 기록하고 있다. 놀랄 것도 없이, 빈곤가구는 최하위부터 7분위까지의 낮은 소득분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최고 9%로 상당히 낮은 비중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빈곤가구(non-poor household)는 십분위 모두에서 발견되며(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1분위는 예외) 그 비중도 훨씬 높아서 독일의 9분위는 30%, 아일랜드의 6분위는 28%에 이른다.

13) 안타깝게도, 이 표는 ECHP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해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한다. ECHP는 그 후신인 EU-SILC와 달리, 시간당 (저)임금의 산정이 가능했다. 2000년에 맞춰 고안된 방식들이 이후로 더 중요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하다.

14) 저임금 관련 근로빈곤이 전체 근로빈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63%, 네덜란드 51%, 기타 국가 35~40%에 이른다.

〈표 4〉 총가구소득 십분위 및 가구빈곤 여부별 저임금 근로자 포함 가구의 비율(15~64세, EU 6개국, 분위별 가구 비율 %, 2000년)

	십분위											전 체
	1	2	3	4	5	6	7	8	9	10	소계	
독일												22
빈곤	6	4	7	6	7	1					3	
비빈곤	6	12	2	18	20	26	21	25	30	23	19	
2인 소득자 비중	1	2	13	27	53	73	86	76	86	77	62	
덴마크												15
빈곤	8	1	1	2			1				1	
비빈곤	1	8	4	9	16	21	23	11	19	18	13	
2인 소득자 비중	100	32	50	45	37	66	95	81	96	92	72	
핀란드												11
빈곤	5	4	3	2	1						1	
비빈곤		2	3	12	7	12	10	14	19	10	10	
2인 소득자 비중			5	23	69	69	64	71	98	85	62	
아일랜드												19
빈곤	1	9	6	6	6	3	1				3	
비빈곤		6	5	15	11	28	22	18	24	22	16	
2인 소득자 비중			51	68	59	87	70	88	94	89	76	
이탈리아												12
빈곤	3	3	6	8	4	2	1				3	
비빈곤		4	2	5	15	15	14	12	11	12	9	
2인 소득자 비중		0	9	20	35	47	52	61	68	65	48	
네덜란드												17
빈곤	9	7	3	7	2	1					3	
비빈곤	1	9	2	13	19	19	20	17	17	21	14	
2인 소득자 비중	25	7	10	49	69	71	79	90	90	85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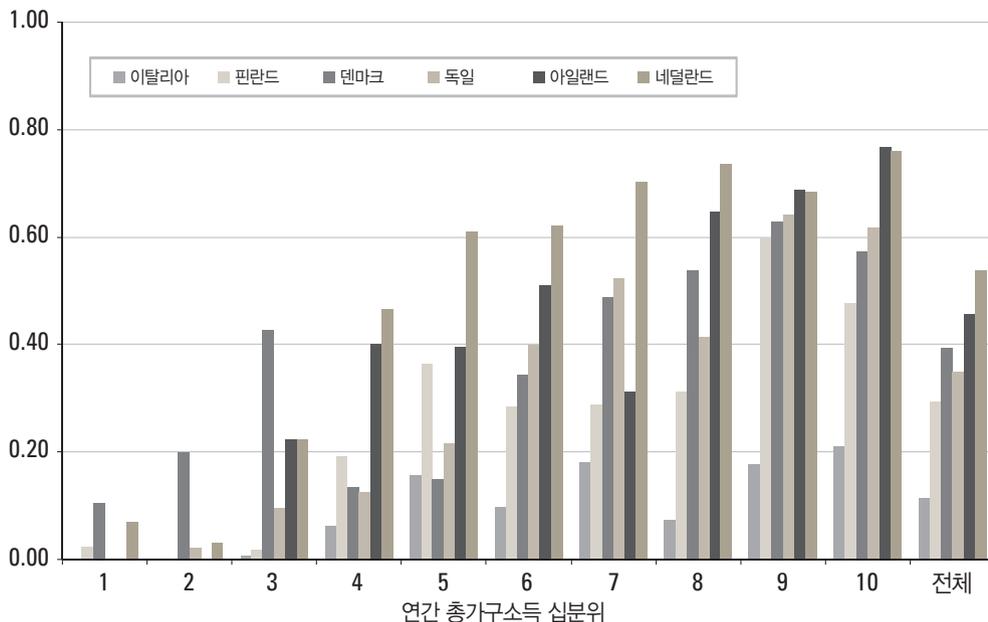
자료 : ECHP를 기초로 저자가 산출한 수치.

〈표 4〉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포함된 비빈곤 가구 중 이중 근로소득(dual earnings) 비중을 통해 중요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의 2인 소득자는 맞벌이 부부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녀와 같은 다른 가구구성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저임금과 관련하여 혼합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⁵⁾ 전국적으로 2인 소득자의 비중은 이탈리아의 48%부터 아일랜드의 76%까지 다양하다. 이 비중은 분위가 높아지면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높은 분위의 상당수는 85%를 초과한다. 덴마크의 7분위, 9분위, 10분위,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9분위, 네덜란드의 8분위와 9분위에 위치한 저임금 근로자 가구의 거의 모두가 2인 소득자 가구이다.

이 중 근로소득의 혼합 방식은 파트타임 저임금 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파트타임 비중은 전체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11%에서 네덜란드의 54%로 다양하다(그림 6). 저임금 근로자 중 파트타임직의 비중은 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따라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크다. 증가가 발생하는 분위의 정확한 범위와 증가율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6개국 모두에서 증가율 상향이 관찰된다.

[그림 6] 저임금 근로자 포함 가구의 파트타임/전일제 혼합(분위별 가구비율 %, EU 6개국, 2000년)



자료: ECHP를 기초로 저자가 산출한 수치.

15) 당연하겠지만, 빈곤가구 중 2인 소득자 가구의 비중은 기껏해야 소수에 불과하다.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변화는 괄목할 만한 평균 학력 신장이다. 이에 뒤 이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가구 노동시장 참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이는 2인 소득자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1인 소득자가 대부분이던 단순한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전일제 1인 부양자 가구를 대신하여 이제는 임금노동과 가계활동을(또는 임금노동과 교육참여를) 병행하는 혼합 방식(combination scenario)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 방식과 함께 매우 다양한 정도의 가구 '노동공급'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여, 현재 파트타임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체 고용 및 고용성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혼합 방식으로 다른 활동과 병행하기가 쉽다는 파트타임의 특성으로 인해, 파트타임직은 저임금 및 저기술직과 일자리를 가진 저기술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 혼합 방식은 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또한 가구 내 1차 소득이 상당하거나 누진세제에 따른 조세부담(tax wedge)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가구 내 2차 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도 쉽게 동의하게 될 정도로 저임금 고용의 확대를 촉진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러한 불평등과 근로소득에서 유래하는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파트타임 일자리로 인해 근로시간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연간근로소득 분포는 시간당 근로소득 분포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간소득 불평등과 시간당소득 불평등의 격차는 1인 소득자 시대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시간당소득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동등대우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연간소득은 가구소득의 기초를 부여한다. 연간 기준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중 소득 비중의 급증으로 심화된 가구소득 불평등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가구 노동공급에 있어 수반되는 변화는 심화된 노동시장 불평등을 상당한 정도로 흡수한다. 노동시장에서 가구 노동공급의 다양성은 개인의 노동공급에 비해 낮다. 그러나 완전하게 흡수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중 소득은 분명히 가구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구노동공급의 다양성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근로소득 및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통합은 2인 소득자 모형(two-earner model)이라는 중요한 요소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양상은 더 복잡해진다. 2인 소득자 모형은 대체로 전일제 소득자 1인과 파트타임 소득자 1인이라는 구성에 기초하는데, 여기서 후자는 저임금 고용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저임금 고용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정의되지만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더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효과는 반대의 경우에도 작용한다. 즉, 저임금 일자리의 과반수 이상이 2인 소득자 가구에서 발견되며, 이 가구들의 상당 부분은 가구소득 분포 상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한다. 특히, 이로 인해 두 분포(소득과 근로소득)의 최하위에서의 관계, 즉 소득 면에서 빈곤과 근로소득 면에서 저임금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진다. 저임금이 일반적으로 빈곤위험을 높이는 하지만, 실제로 저임금의 상당 부분이 비빈곤 가구에서 발견되며 빈곤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 가구구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빈곤이 높은 임금과 병존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병존은 이중 근로소득으로 인해 중위임금 수준이 높아져서 1인 소득자 가구가 도달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위의 결과는 정책입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노동시장 불평등의 증가 원인을 단순히 세계화와 기술변화에 돌릴 수만은 없다. 오히려,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의 진화는 정책입안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 및 태도의 변화에도 좌우된다. 종합해 보면, 앞서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후자는 먼저 근로소득과 소득을 상호 조정하는 가구 노동공급에 있어 불평등을 줄인 다음 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수요를 형성하는 가구구성에 있어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중요한 측면인 가구형성 및 태도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이 두 요소가 빈곤과 불평등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는지,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지금까지의 변화와 그로 인한 완화효과가 일시적이며 결국은 소멸할 것인지 여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재분배 대책(현금보조 및 조세)과 같은 정책 수립을 통해 1차 소득 불평등을 약 1/4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수립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책을 통해 불평등의 심화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수립은 여전히 중요하다. 빈곤과 관련하여, 비빈곤 가구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일자리가 빈곤 완화의 길이라는 접근법('jobs, jobs, jobs' approach)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한 일자리의 창출로 인한 혜택은 빈곤 가구보다는 비빈곤 가구에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소득대책이 고용대책

보다는 적합한 대상 설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비빈곤 가구가 그러한 일자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빈곤 가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자리 접근은 더욱 어려워진다. 끝으로, 비빈곤층이 그러한 일자리를 파트타임으로 갖기를 강하게 원한다면, 이는 그 일자리들이 전일제로 제공될 가능성을 압박하게 되고, 그와 함께 그 일자리들이 2인 소득자 가구 외에서 임금고용직으로 갖는 매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실업가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다. **KLI**

참고문헌

- Bradshaw, Jonathan, and Emese Mayhew(2011), *The measurement of extreme poverty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 Crettaz, Eric(2011), *Fighting Working Poverty in Post-industrial Economies*, Edward Elgar.
- Fraser, Neil, Rodolfo Gutiérrez and Ramón Peña Casas, editors(2011), *Working poverty in Europe*, Palgrave.
- Gautié, Jérôme, and John Schmitt, editors(2010), *Low-Wage Work in the Wealthy World*, Russell Sage, New York.
- GINI-AIAS(2012), Country report The Netherlands, forthcoming at gini-research.org.
- Henning Lohmann(2008), “The working poor in European welfare states: empirical evidence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 Chapter 2 in Andresz, Hans-Jürgen, and Henning Lohmann, editors, *The working poor in Europe*, Edward Elgar.
- Lucifora, Claudio, and Wiemer Salverda(2009), “Low Pay,” Chapter 11 in Wiemer Salverda, Brian Nolan and Timothy Smeeding, editors,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Meschi, Elena, and Franco Scervini(2010), A new dataset of educational inequality, GINI

Discussion Paper 3(gini-research.org).

- Nolan, Brian, and Ive Marx(2009), “Economic inequality,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hapter 13 in Wiemer Salverda, Brian Nolan and Timothy Smeeding, editors,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no date), *What are equivalence scales?* (oecd.org/dataoecd/61/52/35411111.pdf)
- OECD(2008), *Growing unequal*, Paris.
- OECD(2011), *Divided we stand*, Paris.
- Salverda, Wiemer(2012), “Merit and work 1960~2010: Effects of the Dutch tsunami’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part-time employment”(forthcoming as a book chapter, in Dutch).
- Salverda, Wiemer(2008), “Low-Wage Work and the Economy,” Chapter 2 in Wiemer Salverda, Maarten van Klaveren en Marc van der Meer, editors, *Low-Wage Work in The Netherlands*, Russell Sage, New York.
- Salverda, Wiemer, and Ken Mayhew(2009), Capitalist economies and wage inequalit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5(1), pp.126~154.
- Ward, Teny, and Erhan Ozdemir(2011), *The social effects of employment developments across the EU in the crisis*, European Observatory on the Social Situ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Living Conditions.